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문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의2 신설)

개정안 제6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제2항).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3항), 실태조사 결과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임(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현 행	개 정 안
	<u>격차 해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6조1)와 현행법 시행령 제2조2)는 장애인, 기초생활급여 수

1)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제공,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조³⁾는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1.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3)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 활용체제 구축,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14조4)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24~2028)”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한 바 있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당 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돕는 장애유형별 점자·음성·영상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고령자와 농어촌 주민을 위하여 큰글자책을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보급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어자료 서비스 확대 및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계획을 통하여 도서관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⁵⁾에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반영함에 따라, 전국 도서관 통계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봉사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건 수, 관련 예산·공간·프로그램 등이 조사 결과에 포함되고 있음.

나아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 및 공공도서관 등의 장애인 서비스 시설 및 설비 환경, 인력,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통계 수집 및 조사

5) 「도서관법」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긍정적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규율하는 「장애인복지법」 등 각 개별법들은 해당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개별법의 실태조사 규정 >

구분	근거조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1조 ⁶⁾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⁷⁾
농어촌 주민	「농어업인삶의질의법」 제8조 ⁸⁾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⁹⁾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 ¹⁰⁾
65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법」 제5조 ¹¹⁾

6)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5. 농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이러한 장애인 실태조사,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도서관 이용 현황, 교육 관련 현황, 교육 시설 이용 현황 등이 조사되고 있음.¹²⁾

해당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현황 등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서 지식정보 접근과 관련된 설문을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p.25.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p.154.

여성가족부, 「202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64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노인 실태조사」, p.522.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승인통계¹³⁾¹⁴⁾로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정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 신설보다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며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국도서관통계에 장애인 관련 자료, 예산, 인력 등 조사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별도의 실태조사 시행 시 동

1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제113016호」, 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제117035호」

14)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유사 조사에 대한 현장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통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부산광역시는 실태조사 시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통일하여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 취지와 함께 다른 법률을 통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태조사 주체의 일원화 필요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도서관 지식취약계층 관련 조사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조사 ※ 비법정 통계

- (수행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07년부터 '21년까지 총 8회 실시('25년 진행 중)
- (조사대상/주기)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사립 장애인도서관 포함), 특수학교 내 도서관 등 약 1,500개관 / 3년
- (조사방법) 설문조사(수기 입력) ※ 시스템 미활용
- (조사내용) 국립·공공도서관, 사립 장애인도서관 특수학교용 설문지 별도 구성

< 국립 및 공공도서관 현황조사 항목 >

조사부문	조사항목
①도서관 운영·예산 현황	도서관명, 도서관부호, 홈페이지 웹접근성 지침 준수여부, 운영계획, 지침 마련 여부, 장애유형별 등록회원 수·이용자 수·대출자 수, 연간 도서관 전체 예산 및 장애인서비스 활용 예산 현황
②시설·설비 환경	장애인서비스 이용 공간 편의시설 독서보조기기 품목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등
③인력·교육 현황	전담직원 배치 유무, 직원현황 및 인적자원 자격 사항, 지원인력 현황,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육 경험 등
④장서 구성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수집(제작)·보유 현황(구입/기증/자체제작)
⑤관련 서비스 제공	자료대출, 연계서비스(책나래 등) 제공, 운영프로그램, 교육 현황 등

□ 전국도서관통계 ※ 비법정통계, 국가승인통계

- (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07년부터 '21년까지 총 8회 실시('25년 진행 중)
- (조사대상/주기) 전 관종 도서관 약 22,000개관 / 1년

국립	공공	작은	대학	학교	병영	장애인	전문	교정시설
4	1,296	6,830	456	11,842	1,686	31	495	54
직접 조사	직접 조사	별도 조사 (문체부)	별도 조사 (교육부)	별도 조사 (교육부)	별도 조사 (국방부)	별도 조사 (국립장애인도서관)	직접 조사 (전문도서관협회 협조)	직접 조사 (법무부 협조)

- **(조사방법)** 국립·공공도서관 등 직접 조사 대상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활용
- **(조사내용)** 관중 간 조사지표 및 항목을 다르게 설정
 -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는 공공도서관만 조사

공공도서관	국립.전문도서관
협력 현황, 소장자료, 시설.설비, 직원, 예.결산, 이용 및 이용자 현황, <u>지식정보취약계층*</u> 및 어린이서비스 현황 등	소장자료, 시설.설비, 직원, 예.결산, 이용 및 이용자 현황, 메타데이터.원문 구축현황

* '25년('24년 실적)부터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조사항목 확대

▲ 장애인용 특수자료 수(인쇄용 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별 ▲ 봉사대 상자수 ▲ 서비스 이용 수 ▲ 예산 ▲ 서비스 공간 유형(별도/자료실내/미설치) ▲ 프로그램 운영 여부